

## 대표이사 확인서

NICE신용평가(주) 귀중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 10에 의거 본 건 ( ) 의 신용 평가를 위해 당사가 NICE신용평가(주)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합니다.

1. 제출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제출자료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제출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평가 요청인이 NICE신용평가(주)에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나 정보(면담 또는 질의 시 신용평가 요청인이 제공하는 답변 포함)는 신용평가 요청인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공식적인 의견으로 간주됩니다.

20      년      월      일

신용평가 요청인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유의사항)

본 확인서는 본 건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간약정인 경우 또는 하나의 약정으로 모든 발행 회차를 포괄하는 경우 본 확인서는 최초 약정시에만 1회 작성되지만, 약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감독기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어 신용평가업무가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